

2024년도 「한국지방세연구원」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0월 24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0월 12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10. 24.)

2. 제안설명 요지

□ 제안이유

(제안설명자: 세무관리과장 겸임 김은진)

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제1항

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제1항

나. 출연대상: 한국지방세연구원

다. 출연금액: 금22,051천원(전년대비 1,507천원 증액)

라. 산출기초: 2022년 보통세¹⁾ 세입결산액 183,759,426천원의 1만분의 1.2

마. 출연시기 및 방법: 2024년 3월 중

1) 보통세: 조세부과의 목적에 따라 특정지출 목적에 한정되어 있는 조세를 목적세라 하며, 이러한 구속없이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조세를 일반세 또는 보통세라 한다.

3. 관계법령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, 제152조

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

나. 예산조치: 2024년도 예산편성(22,051천원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,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²⁾은 전전년도(2022년) 보통세 세입결산액 183,759,426천원에 대하여 1만분의 1.2 비율에 해당하는 22,051천원임
- 이는 2024년 전국 자치단체 출연금 예상액 130억 7,856만 9천원의 약 0.17%이고 서울특별시 본청 및 각 구의 출연금 31억 9,971만 7천원 중에는 약 0.69%를 차지하고 있음
-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) 우리 구 연도별 출연금 현황

(단위: 천원)

연도	2023	2022	2021	2020	2019	2018	2017	2016	2015	2014
출연금	20,544	18,552	17,418	17,190	16,536	14,912	13,944	12,627	11,488	11,091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세기본법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 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 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